

#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## 심사보고

농림수산위원회

1994. 12. 26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 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· 회부 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다. 상정 일자 : 제109회 정기회

·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(1994. 12. 23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손문주)

가. 제안 이유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  -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  -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이 가능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 병 생)

본 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,

양곡가공업 등록이 양곡관리법령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양곡 가공업 허가 절차에 관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없음"

5. 검토요지 : "없음"

6. 심사결과 : "원안 가결"

7. 소수 의견요지 : "없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

9. 별첨

·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 1부. "끝"